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270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창섭	서경택	홍동석	손정수	김병환	07/17 김영배
협 조	<p style="text-align: right;"><i>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i></p> <p><i>도시환경국장 최성태</i></p> <p><i>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i></p> <p><i>정무보좌관 윤정배</i></p>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사운영 계획



2015. 07

행 정 국
(행정지원과)

-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사운영 계획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인사분야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민선6기 주요추진사업과 마을 민주주의, 마을 복지센터 운영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I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전문직위의 지정)
- 마을복지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인사분야 제도개선 및 지원계획안
(구청장 방침 행정지원과-8280 2015.03 20)
- 구청장 요청사항(2015.07.01. 민선6기 1주년 기념 직원 정례조례시)
⇒ 마을복지 기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

II 인사원칙

- 그동안은 관리의 행정이 중요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민과의 점점 부서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동 주민센터 직원등 현장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III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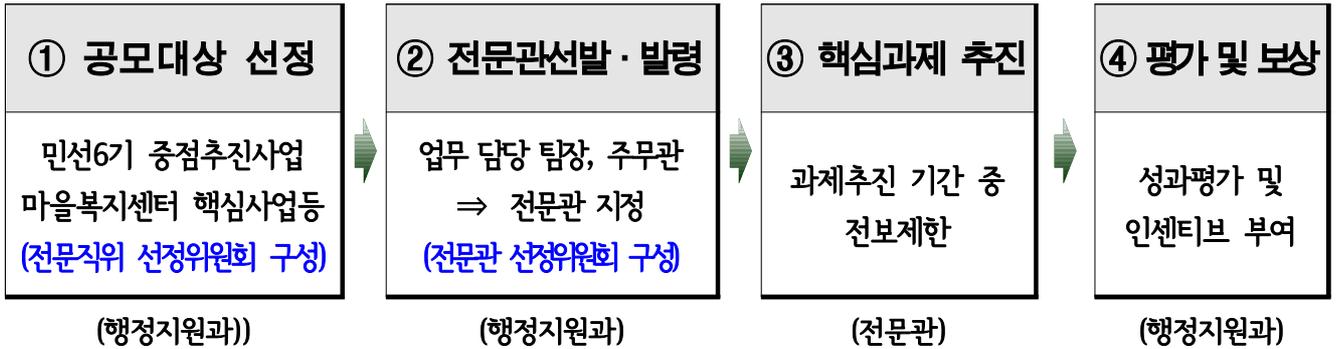
- 마을복지 전문관제 운영을 통한 마을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마을민주주의 및 마을복지센터 운영 유공공무원 우대를 위한 성과지향 지원시스템 구축
- 마을복지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마을복지 맞춤형 인사시스템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업무추진에 효율성 도모

IV

세부추진계획

1 마을복지 전문관제 도입 · 운영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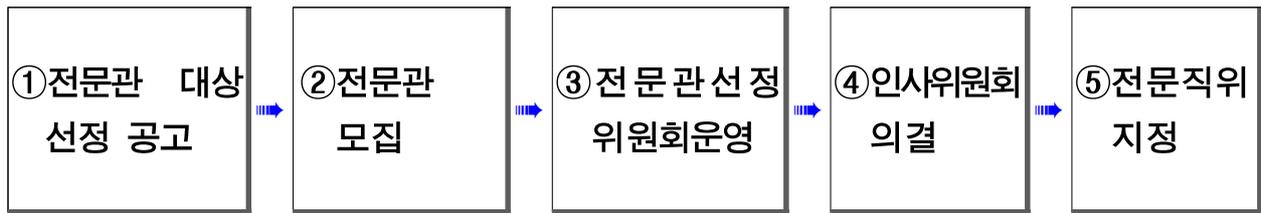


□ 전문관대상 사업 선정

- 전문관직위 대상사업 선정 개요
 - 전문관직위 : 팀장 5명 내외, 6급이하 10명 내외
 - 직위대상 : 팀장 및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통합인사대상제외)
 - 직위운영 : 3년간 전보제한, 본인 희망시 5년내외 연장 가능
 - 선정 대상 사업
 - 민선6기 중점추진 주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 장기적인 직무 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업무
 - 마을민주주의· 마을복지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업무
 - 선발방법 : 공모 또는 추천에 의한 전문직위 · 전문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전문직위 선정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11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국장5(교육문화, 도시환경, 안전건설교통,기획경제, 행정)
과장2(기획예산, 행정지원)동장3(권역별 1개동장 선정)
 - 임 무 : 전문관 공모대상 직위(업무) 선정

□ 전문관 선발 · 발령

○ 선정 절차



○ 선발방법

- 모집방법 : 내부행정망 게시관 활용
- 모집대상 : 팀장 및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통합인사대상제외)
- 선발방법 : 전문관 선정 위원회 선발·추천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전문관 선정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14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국장5(교육문화, 도시환경, 안전건설교통, 기획경제, 행정) 과장3(마을담당관, 기획예산, 행정지원) 동장3(권역별 1개동장 선정) 6급이하 2(추첨에 의하여 선정)
- 임 무 : 공모대상 직위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안) 심사 후 인사위원회에서 전문관 지정 추천

□ 핵심과제 추진

- 전문관은 핵심추진과제 관련한 사무를 주도적으로 추진
- 전문관은 휴직, 전출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간(최소 3년) 동안 전보 제한
- 전문관은 승진이후(7급이하)에도 재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담당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해 장기 근무 활성화

□ **전문관 인센티브**

재정상 우대

- 전문직위 수당 지급(「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2조, 별표9의9·나)
 - 지급시기 : 전문직위 발령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수당액	5만원	8만원	12만원	20만원

- 성과급 지급기준에 전문관 지정자 우대기준 신설(가산점 부여)

인사상 우대

- 승진 심사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전문관 우대
- 해외 출장 및 단기연수, 표창 등 우대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장기(3년이상) 근무한 전문관에게 할애
- 주무팀장, 총괄주무관 등 주요보직 결원시 전문관 우선 총원 원칙
- 전문관 대외명칭 사용 (기안문, 명함 등)

□ **시범운영일정(팀장1명, 6급이하 1명)**

-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사운영계획 방침수립 : 2015년 7월말
- 전문직위 공모대상 사업 선정 : 2015년 8월 중순
- 전문관 공개모집 : 2015년 8월말
- 전문관 선발위원회 개최 : 2015년 9월초
- 인사위원회 전문관 심의 의결 : 2015년 9월말
- 선발 전문관 인사발령 : 2015년 10월 1일자

⇒ **정상 운영은 '16년 1월 1일자 시행**

② 동 마을복지 운영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추진 목표

- ◇ 마을민주주의 및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특성화된 모범사례를 발굴
- ◇ 그 성과를 공유 및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마을과 사람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찾아가는 마을복지생태계의 조기 정착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민선6기 1주년 직원 정례조례 구청장 특별지시사항('15.7.1)

□ 추진방향

- 마을민주주의 및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보완 · 발전방안 모색

□ 사례관리 평가 보고회 개최

- 시 기 : 매월말(15.10월부터)
- 대 상 : 마을복지 · 도시재생 분야 부서 및 동 추진 우수사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의 문제들을 공동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은 특성화된 사업 성과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

- 평 가 : 사례관리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
- 결과조치 : 등급별 실적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 평가보고회 세부 운영방안

- 보고회 일정(안)



- 월말 평가보고회 : 매월 부서 및 동별 추진사항 중 우수사례 1~2개 선정
- 종합평가(4월, 10월) : 매월 평가결과 A등급 대상사업 대상 종합평가
- ※ 최초 10월 평가보고회는 7월~10월 기간 중 추진 우수사례로 평가

○ **평가분야** : 마을복지 및 도시재생 관련 부서 및 동 추진사례

평가분야	마을자치분야	복지보건분야	도시재생분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관계망 형성 · 동 행정혁신 ·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복지 ·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복지생태계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사업 · 마을환경정비 · 전통시장 활성화 등

○ **평가절차**

【매월】 서면심사(등외 판별) → 사례발표(등내 대상) → 등급 심사·결정

【연말】 A등급 우수사례 대상 스토리텔링 사례발표 → 등급 심사·결정

○ **평가방법** : 『 사례관리 평가 심사위원회 』 구성 운영

- 사례관리 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등급별 평가

※ 평가심사위원회 및 평가기준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평가등급 및 등급별 비중**

등급	A	B	C	등외
비중	10%내외	20%내외	30%내외	40%내외

□ **인센티브 부여**

○ **실점가점** : 종합평가 보고회 등급별 차등부여

등급	A	B	C	등외
부여점수	0.3	0.2	0.1	0

※ 등급별 부여총점 점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기여도에 따라 안분

○ **특별승급** : 종합평가 A등급 평가자를 특별승급 대상후보 선정 제출

○ **포상금지급** : 월별 동 우수과제 포상시 우선 선정

③ 업무수행 우수자 특별승급제도 확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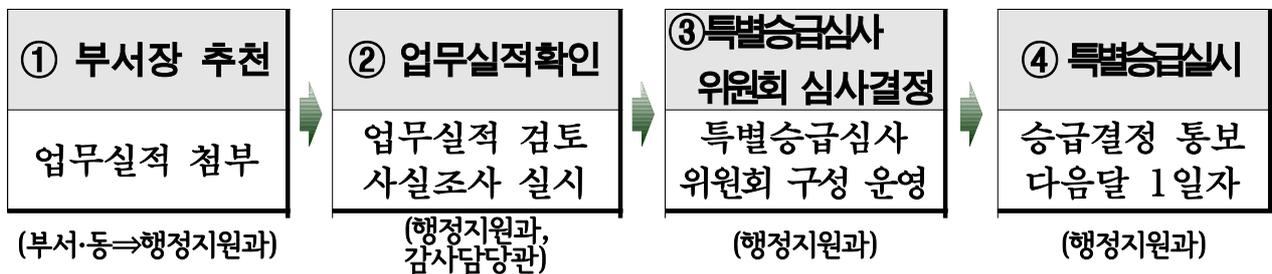
추진 목표

- ◇ 민선6기 주요추진업무, 마을민주주의, 마을복지센터 업무추진 우수자 적극 발탁
-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실시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2항(보수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 2015년 지방공무원특별승급 운영기준

□ 운영절차



□ 특별승급 대상 및 인원

- 대 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인 원 :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봉제공무원) 정원의 2%이내
- 요 건
 -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 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

- 심사시기 : 연2회(상반기, 하반기)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 구성 심사 결정

○ 추천 및 업무실적 조사

- 추천대상 : 민선6기 주요추진업무, 마을민주주의, 마을복지센터 업무추진 우수자
- 추천권자 : 부서장·동장 및 중점추진업무 추진 총괄부서장
- 업무실적 검토 및 조사 실시
 -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특별승급을 아니할 수 있음

○ 『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 구성 운영

- 구 성 : 총7명
 - 당연직 : 4명(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마을담당관, 행정지원과장)
 - 위촉직 : 3명(구청장이 외부전문가 위촉)
- 기 능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 결정
 - 특별승급심사 기준의 결정
 - 특별승급대상자 확정
- 심사시기 : 연2회개최(필요시 수시개최)
- 결 정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의 2/3찬성
 - 기타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사결정 통보

- 통 보 : 특별승급 심사결과 즉시 승급권자에게 통보
- 승급발령 : 승급결정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
 - ※ 특별 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 승급
- 특별승급 시행결과 서울시장에게 통보

금년도 추진일정

- 특별승급운영지침 마련 시행 : 2015년 7월말
- 특별승급운영지침 공지 및 교육 : 2015년 8월 중순
-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및 접수 : 2015년 12월초
- 업무추진실적 확인 : 2015년 12월중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2015년 12월말
- 특별승급 실시 : 2016년 1월 1일자

4 행정사항

- 전부서(동) : 전문직위·전문관 추천, 특별승급대상자 추천
- 감사담당관 : 특별승급 대상자 업무추진실적 사실조사 실시
- 복지정책과 : 사례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철저

- 따로붙임
1. 전문직위 직위수행요건표 1부.
 2. 전문직위 의결서 1부.
 3. 전문과 응시원서 1부
 4.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전문관 선정 의결서 1부
 6. 특별승급 신청서 1부. 끝.

직무수행요건표

(1.전문직위명)

직위 지정 필요성

--

직위관련 기본사항

담당관·국명	부서명	직위명	보직가능 직급
		00담당	

주요 업무	
----------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외국어 기준	
	기타 요건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외국어 기준, 기타 요건(○○법의 유권해석 능력,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회능력, 리더십, ○○을 ...하게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자 등)을 포함
우대요건		

의 결 서

일 시 :

안 건 : 전문직위 지정 직무 선정 추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을 위하여 상기 안건을 심의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함

2015. .

전문직위 선정 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전문관』 응시원서

① 지원 사항						사 진
1 지 망	()담당직위	2 지 망	()담당직위			
②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소 속		직렬·직급	년 월 일			
현직급일	년 월 일	현보직일	년 월 일			
연 락 처 (사무실) (H/P)		임용구분	()년도 ()급 () 직렬 공개경쟁(), 경력경쟁(특채)()			
③ 학 력 사 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및 전 공			
고등학교	. . ~ . .	고등학교				
학 사	. . ~ . .	대학교				
석 사	. . ~ . .	대학교				
박 사	. . ~ . .	대학교				
④ 경 력 사 항						
기 간		근 무 부 서	직 위(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⑤ 교 육 및 훈 련						
기 간		교 육 과 정 명	교 육 기 관			
. . ~ . .						
. . ~ . .						
. . ~ . .						
. . ~ . .						
⑥ 자 격 및 면 허			⑦ 상 별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간	년 월 일	종 류	수여기관	
. .			. .			
. .			. .			
. .			. .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0 0 0 (서명)
확인자 과 장 0 0 0 (서명)

※ 본 양식을 다운받아 변경 없이 가급적 1매 이내로 작성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전문직위 주요업무 내용 및 업무특성 작성
○ 전문직위 지원동기	학교 전공, 보직경로 등 감안 적임업무임을 작성 또는 전공, 관련 보직경로 등이 해당 없을 경우 직무 희망사유에 대해 작성
○ 전문직위 수행계획	업무수행 비전과 목표, 업무의 발전방안,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직무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기재 (2매 이내)

의 결 서

일 시 :

안 건 : **전문관 선발 추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문관 선발을 위하여 상기 안건을 심의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함

2015. .

전문관 선정 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 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2011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필요시 계획서등 첨부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2인이상)